

|        |             |
|--------|-------------|
| 의안번호   | 2213391     |
| 의 퇴 인  | 서미화의원       |
| 회 답 일  | 2025.11.11. |
| 추 계 번호 | 25D5410     |

#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## 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투표관리관이 장애 등으로 기표절차 수행이 곤란한 선거인의 투표를 보조할 공적보조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향후 5년간 총 9,000만원(연평균 1,8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27 | 2028<br>(국선) | 2029 | 2030<br>(대선·지선) | 2031 | 합계 | 연평균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|----|-----|
| 공적보조원 교육 실시<br>(안 제147조제12항 등) | -    | 29           | -    | 61              | -    | 90 | 18  |

주: 1. 공적보조원 교육 실시(안 제147조제12항 등)는 의무규정 재정수반요인

2. 본 추계는 선거일에 투표소 당 1명의 공적보조원을 두며 투표보조 절차 등에 대한 교재를 인쇄하는 비용에 한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## II. 재정수반요인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        | 주요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1  | 안 제147조제12항<br>(투표소의 설치) 신설 | 투표관리관은 공적보조원 <sup>1)</sup> 에 대하여 투표보조의 절차 및 준수사항 등 해당 직무에 필요한 교육을 투표일 전에 실시하여야 함<br><br>사전투표 시 공적보조원의 지정 및 교육 등은 안 제147조제12항을 준용하도록 규정 | 의무규정 |

1) 개정안에서 투표관리관은 신체적 장애 등 또는 노령으로 인하여 혼자 기표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으며,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투표관리관에게 투표를 보조할 사람(이하 “공적보조원”이라 한다) 1인 또는 2인의 동반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

### 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#### 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        | 추계여부 | 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|
| 1  | 안 제147조제12항<br>(투표소의 설치) 신설 | ○    | -             |

#### 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본 추계에서는 선거일에 투표소 당 1명의 공적보조원을 두며,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투표보조 절차 등에 대한 교재를 인쇄하는 비용에 한정하여 추계하는 것으로 가정
  -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024년 예산 각목명세서에 따르면, 투표사무관계자를 위한 교육 동영상 제작하여 활용하고 투표관리 매뉴얼과 리플릿을 배포하여 교육 실시
  - 다만, 사전투표사무관계자 교육은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활용하고 투표관리 매뉴얼 등은 별도로 배포하지 않음
  - 따라서 본 추계에서는 개정안에서 규정한 사전투표시 공적보조원에 대한 교육은 기 제작된 동영상을 활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에서 제외
-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를 적용<sup>2)</sup>
-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

2)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(2025.11)

|               | 2024 | 2025 | 2026 | 2027 | 2028 | 2029 | 2030~ |
|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-|
| 소비자물가상승률(CPI) | 2.3% | 2.0% | 1.9% | 2.0% | 2.0% | 2.0% | 2.0%  |

### 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선거일에 활동하는 공적보조원을 위한 투표관리매뉴얼 등 교육 교재를 인쇄하는 비용
- 본 추계에서는 공적보조원 수에 1인당 교재 인쇄비용을 곱하여 산출
  - (공적보조원 수) 2028년 14,259명, 2030년 28,760명
    - 앞서 전제한 바와 같이 선거일에 투표소 당 1명의 공적보조원을 두며 투표소 수는 직전 공직선거 시 투표소 수와 동일한 것으로 가정
    - 2028년 국회의원선거 경우,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시 투표소 수가 14,259개소이므로 공적보조원 수는 14,259명
    - 2030년은 대통령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로 각각 직전 공직선거 시의 투표소 수를 합하면 총 28,760개소(=대선 14,295개소 + 지선 14,465개소)이므로 공적보조원 수는 28,760명
  - (1인당 교재 인쇄비용) 2028년 2,055원, 2030년 2,138원으로 추정
    -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024년 예산 각목명세서에 따르면, 투표사무관계자 교육을 위한 투표관리매뉴얼과 리플릿(2종) 인쇄비용은 1,900원
    - 본 추계에서는 추계기간 동안 국회예산정책처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

[표 2] 1인당 교재 인쇄비용: 2027~2031년

(단위: 원)

|             | 2027  | 2028  | 2029  | 2030  | 2031  |
|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1인당 교재 인쇄비용 | 2,014 | 2,055 | 2,096 | 2,138 | 2,180 |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- 추계결과, 투표관리관이 장애 등으로 기표절차 수행이 곤란한 선거인의 투표를 보조할 공적보조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향후 5년간 총 9,000만원으로 추계됨

[표 3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| 구 분               | 2027 | 2028<br>(국선) | 2029 | 2030<br>(대선·지선) | 2031 | 합 계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|
| 공적보조원 수 (a, 명)    | -    | 14,259       | -    | 28,760          | -    | -   |
| 1인당 교재 인쇄비용(b, 원) | -    | 2,055        | -    | 2,138           | -    | -   |
| 추가재정소요(=a×b, 백만원) | -    | 29           | -    | 61              | -    | 90  |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## 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는 선거일에 투표소 당 1명의 공적보조원을 두며 투표보조 절차 등에 대한 교재를 인쇄하는 비용에 한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## V. 작성자

- 성명

|         |     |     |
|---------|-----|-----|
| 국회예산정책처 | 분석관 | 과장  |
| 행정비용추계과 | 이미연 | 김안나 |

- 대표연락처

|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성명  | 전화번호         | 이메일 주소           |
| 이미연 | 02-6788-4661 | mylee@nabo.go.kr |